

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(休) 청소년
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3. 8. 28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(休)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08호로 2023년 8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다자녀 가족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다자녀 가족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(안 제13조)
- 나. 다자녀 가족 혜택 대상 막내 나이를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변경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2) 인권영향평가: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3. 7. 6. ~ 7. 26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다자녀 가족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○ 검토결과

-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¹⁾이 0.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며, 서울시는 전국 최하위인 0.59명을 기록하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, 서울시에서는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족의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, 다자녀가족 혜택 대상의 막내자녀 나이를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, 우리 구 조례의 다자녀 기준 또한 서울시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됨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1) 합계출산율 : 한 여자가 가임기간(15~49세)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

참 고 자 료

1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2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다자녀 가족"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.

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(생 략)
2. "다자녀가족"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.
3. (생 략)
4. "다둥이 행복카드"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(다만, 막내가 18세 이하)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.
- 5 ~ 8(생 략)

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
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3. 8. 28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09호로 2023년 8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
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
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3. 7. 6. ~ 7. 26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-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○ 검토결과

- 노인상담센터의 기능이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동 사례관리, 노인맞춤돌봄, 재가노인지원서비스, 우리동네돌봄단 등의 사업들과 중복됨에 따라 중복사업의 정리를 위해 2023.3.31.자로 노인상담센터 운영을 종료함.
- 이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상담, 교육,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여 소외·고독감 등으로 인한 자살, 세대간의 갈등, 가족의 분열, 노인학대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설치) ① 명칭은 「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」(이하 “상담센터”라 한다)로 한다.

② 상담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3조(기능)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
2. 노인 학대,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
3.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
4. 지역 내 노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
5.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“상담센터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
제4조(시설) 상담센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5조(인력) 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

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.

- ② 센터장을 제외한 상담센터 종사자는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자원봉사) 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

- 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의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,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-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강사) 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-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) ① 상담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2.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3. 수탁자는 관계 법령,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4. 보조금은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지도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